

월간퀘도

중소기업을 위한 월간 법률 실무 해제

제2호 · Issue 02

2026년 5월

발행 / 신한솔 변호사

이번 호 목차

섹션 01 — 가업상속공제 실무 해제: 30년 키운 기업, 다음 세대에 넘기는 법의 구조

섹션 02 — 직원이 자료를 들고 나갔을 때: 영업비밀 침해의 세 관문

섹션 03 — 이 달의 판례

편집자의 말 — 월간궤도가 다루는 것

월간궤도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오너와 실무자를 독자로 상정하는 월간 법률 해제지다. 본지 섹션 1은 매 호 하나의 법률 분야를 택해, 사건이 어떤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지, 어떤 법령·시행령·유권해석·판례가 그 절차를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기업과 경영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과 예방의 선택지는 무엇인지를 해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지는 필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다. 현행 법령·시행규칙·유권해석·조세심판례·판례를 체계적으로 읽어내어, 그 속에 이미 정리되어 있는 실무 구조를 독자가 참조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낸 해제지다. 개별 사건의 진행은 변화무쌍하며 각 기관 절차의 실제 진행 속도에도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편차가 있지만, 그것을 규율하는 법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본지는 그 구조를 전한다.

따라서 월간궤도는 읽어서 배우는 글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쓴 글이다. 목차·조문·판례 사건번호가 뺄뺄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달의 판례는 호에 따라 1~2건을 선별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구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실무 해제

0. 도입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오너가 30년 키운 회사를 자녀에게 넘기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숫자는 상속세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제조업 법인은 드물지 않고, 최고세율 50%의 누진구조 아래서 그 세액은 오너의 가용 현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상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이 문제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다. 1997년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입 초기의 공제한도는 1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대상 업종과 한도가 확대되었고,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독립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이하 법 제18조의2)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구조가 확립되었다. 지금의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다.

제도의 취지는 단순하다.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이 해체되거나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고용·거래관계가 세대교체 과정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이 혜택은 무조건적이지 않다. 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요건이 엄격하고, 공제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이 이자 상당액과 함께 추징된다.

제도의 골격 — 사전요건, 공제, 사후관리의 삼단 구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구조는 세 단계로 나뉜다. 사전요건, 공제, 사후관리다.

사전요건은 세 축으로 구성된다. 가업 자체에 대한 요건(시행령 별표의 업종, 중소·중견기업 규모,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최대주주 지위 10년 이상 보유,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에 대한 요건(18세 이상, 2년 직접 종사, 임원·대표이사 취임)이다. 세 축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의 효과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사업유관비율(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이 금액이 곧 공제 금액이 되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의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50억 원이고 사업유관비율이 90%라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45억 원이 되고, 이 금액이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최고세율 구간의 납세자라면 세액 차이가 2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사후관리는 공제를 받은 이후 5년간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네 가지 추정 사유(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주식등의 지분감소, 고용유지 미달)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된다.

제도의 실행 동선 — 두 가지 경로와 세 국면

가업상속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법적 경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경로A는 상속이다. 피상속인(1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2세)이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법 제18조의2)를 신청한다. 경로B는 증여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주식을 2세에게 증

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받는다. 두 경로는 기업승계를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상속과 증여라는 서로 다른 선택지다. 세율 구조, 사후관리의 범위, 피상속인 사망 시 정산 방식이 다르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증여자 사망 시 해당 주식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정산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증여 경로는 완전히 독립된 종결 절차가 아니라 사전 승계와 사후 정산이 결합된 구조다.

국면 1. 요건의 사전 정비. 1세 측에서는 최대주주 지위(특수관계인 합산 40% 이상)의 10년 이상 연속 보유와 대표이사 재직 이력을 확인한다. 2세 측에서는 해당 법인에 2년 이상 직접 종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이 2년 종사의 입증이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것,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급여가 기록되어 있을 것, 사내 업무분장에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종사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27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 관리·임대관리·세금 납부 등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접 종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면 2. 넘기는 시점. 상속 경로에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공제를 신청한다. 증여 경로에서는 1세(60세 이상)가 2세(18세 이상)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과세특례를 신청한다.

국면 3. 사후관리. 두 경로 모두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추정 사유의 범위가 다르다. 상속 경로는 네 가지(자산처분·미종사·지분감소·고용유지)이고, 증여 경로는 가업종사·가업유지(휴폐업·업종변경 포함)·지분유지를 감시하되,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과 고용유지를 독립된 추정 사유로 두지 않는다. 이 차이가 경로 선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개편 전망과 본 해제의 목적

2026년 현재 이 제도는 전면 개편이 예고되어 있다.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은 수도권 대

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중 11곳(44%)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되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정부는 대상 업종 축소, 경영기간 상향, 사후관리 강화, 토지 공제한도 설정을 골자로 한 제도 전면 재설계를 예고하였다. 다만 구체적 조문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2024년 12월 국회에서 핵심 개정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어 시행은 빨라야 2027년 1월 1일이다.

본 해제는 현행법의 구조를 해부한다. 사전요건의 세 축(1부), 가업상속재산의 계산 구조(2부), 사후관리 추징의 네 가지 사유와 정당사유(3부), 증여세 과세특례와의 경로 선택(4부), 추징을 다투는 불복 절차(5부). 이 다섯 단계가 본 해제의 본체다.

1 부 — 사전요건의 세 축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세 축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어느 한 축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1. 가업 요건 — 업종, 규모, 경영기간

업종.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은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을 요구한다. 별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과 개별법률에 따른 업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을 열거한다. 업종 판정에서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등록을 요하는 업종에서 등록 전 영위기간의 산입 여부다.

조세심판원 2026서0173 결정은 이 쟁점에 대한 기준선을 보여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전광역시 소재 호텔을 1990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나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한 것은 2016년 10월이었다. 청구인은 등록 전에도 동일한 시설로 관광온천호텔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심판원은 관광진흥법 제4조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면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우수숙박시설 지정은 관광숙박업 시설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대해 실시

하는 점 등을 들어, 등록 없이 운영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법상 등록 요건 충족 여부가 형식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규모.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매출액 기준에서 조세심판원 2025중0140·2025부1748 결정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후 상속 개시 당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처분청은 분할 전 법인이 10년 이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심판원은 법문이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로 규정할 뿐 10년간 계속 충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속 개시 당시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인적분할로 매출액이 분산되어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처분청은 이것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편법 분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으나, 심판원은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분할이었다고 인정하였다.

경영기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경영기간은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 변경 기간을 합산한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괄호).

2. 피상속인 요건 — 최대주주 지위와 대표이사 재직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거래소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대표이사 재직은 세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10년 이상(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계속 재직할 경우에 한정),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이다(같은 호 나목 1)·2)·3)).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세 기준이 택일적이라는 것이다. 가업영위기간이 30년인 경우 50% 기준(15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면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대표이사

서 퇴임하였다가 복귀한 경우, 복귀 전 기간이 연속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 이력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상속인 요건 — 연령, 종사, 취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가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같은 호 나목).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종사 요건이 면제된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같은 호 다목·라목).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같은 호 후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27 판결은 2년 종사 요건의 입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다. 피상속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고, 상속인은 부동산 관리, 임대관리, 세금 납부, 정부지원금 신청, 전기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직접 종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소송 과정에서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2년 종사의 입증에는 법인등기부상 임원 등기, 4대 보험 가입 기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업무분장표 등 객관적이고 시계열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사후적 진술이나 추상적 업무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건 축	핵심 조건	실무상 주요 쟁점
가업	시행령 별표 업종 + 중소·중견기업 규모 + 10년 이상 경영	등록 전 기간 불산입(조심2026서0173), 인적분할 후 매출액 기준(조심2025중0140)
피상속인	최대주주 40% 이상 10년 보유 + 대표이사 재직(3기준 택일)	최대주주 지위 연속성, 대표이사 퇴임·복귀 시 기간 산정
상속인	18세 + 2년 직접 종사 + 임원·대표이사 취임	직접 종사의 입증(서울행법 2024구합74427), 65세 전 사망 시 면제

2 부 — 가업상속재산의 계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으로 산정 방식이 다르다(시행령 제15조 제5항).

개인사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비사업용 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이다(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나, 어떤 자산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인지의 판단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법인의 경우 — 사업유관비율과 사업무관자산

법인의 경우 산정 구조가 복잡하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사업유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사업유관비율은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업무관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공제 금액도 줄어든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제 금액의 크기를 직접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다.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 목은 사업무관자산을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가목: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업무무관 부동산·동산·유가증권 등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자산이다.

나목: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임직원의 범위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다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다만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금(미등기 전세계약 포함)은 제외된다.

라목: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여기서 현금은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부터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상속 직전 현금을 대량 축적한 경우 소급적으로 5년 평균과 비교하여 초과분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마목: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금융상품. 이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진다.

조세심판원 2025서2604 결정은 마목의 적용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준공영제)인 쟁점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이 사업무관자산인지가 쟁점이었다. 청구인은 수입금이 사후 정산 구조이므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의 자금대기 상태에서 재무건전성 평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의 금융상품 취득은 투자활동에 해당하고, 약 2년간 인건비·차량구입 할부금 등에 사용한 실적이 없으며, 원금 회복 후 차익을 실현하여 매도한 것은 투자활동이라고 반박하였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려면 실제로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취득 동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제한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산출되면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한도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다(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금액만 공제된다.

사업무관자산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내용	예외
---------------------------	----	----

가목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자산	—
나목	타인 임대 부동산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직원 무상임대 주택(5년 이상)
다목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학자금,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전세금
라목	과다보유현금(직전 5년 평균의 200% 초과)	—
마목	영업무관 주식·채권·금융상품	실제 영업자금 사용 실적 필요(조심 2025서2604)

3 부 — 사후관리: 네 가지 추정 사유와 정당사유

법 제18조의2 제5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이자상당액과 함께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시행령 제15조 제16항).

추정 사유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가액 대비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이 40% 이상인 경우 추정된다(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 여기서 "처분"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시행령 제15조 제10항 제2호).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는 다음 일곱 가지를 정당한 사유로 열거한다.

가. 수용·협매수·국가양도 또는 시설 개체·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통합·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변경 전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이전된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되 변경된 업종에 대체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사유의 공통 구조는 처분이 가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것이고, 처분 자산이 대체 취득 또는 가업 목적으로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현금화 목적의 매각은 정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징 사유 2: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세 가지 경우를 가업 미종사로 본다. 첫째, 상속인(배우자 종사 인정의 경우에는 배우자)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거나 사내이사로 강등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항 제2호).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별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을 승인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업종 변경의 범위가 "대분류 내"로 한정되므로, 예를 들어 제조업(C분류) 내에서 식료품 제조에서 화학제품 제조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제조업에서 도매업(G분류)으로 변경하는 것은 추징 사유가 된다. 셋째,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

정당사유는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가 세 가지를 열거한다. 가. 상속인 사망. 나.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다.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사유(7가지)에 비해 범위가 좁다.

추징 사유 3: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추징된다(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은 지분 감소

에 해당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열거한다.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제1호),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제2호),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제3호).

이 추정 사유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감자(減資)의 유형별 취급이다.

조세심판원 2023서0023 결정은 균등유상감자가 추정 대상이라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100% 주주로서 균등유상감자 후에도 지분율이 100%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지분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2017부5161 선결정례를 원용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균등무상감자만 정당사유에 추가되었으므로(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바목), 미열거된 균등유상감자는 추정 대상이라고 반박하였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균등무상감자는 출자금 회수 없는 비자발적 감소이므로 예외가 인정되지만, 유상감자는 출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지분비율이 유지되더라도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선결정례는 2019년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 2014서2390 결정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인 내부의 지분율 변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주식을 증여한 이상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았다. 가족 간 이전이라는 사정은 추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기존 보유 주식(상속 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처분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또한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법규과-763).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른 무상감자 및 채무 출자전환은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사유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사목).

지분 관련 행위	추정 여부	근거
균등유상감자	추정	조심2023서0023 (유상감자는 미열거)
상속받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추정	조심2014서2390 (가족 간 이전도 처분)
기존 보유 주식 처분 + 최대주주 유지	비추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	비추정	서면법규과-763
균등무상감자	비추정(정당사유)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바목
법원 회생결정 무상감자·출자전환	비추정(정당사유)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사목

추정 사유 4: 고용유지 미달

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고, 동시에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정한다. 양자 모두 90% 미만이어야 추정되므로, 근로자 수가 90% 미만이라도 총급여액이 90% 이상이면 추정되지 않는다. 역으로 총급여액이 90% 미만이라도 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추정되지 않는다. 기준은 5년간의 전체 평균이므로, 단일 사업연도의 일시적 변동만으로 곧바로 추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5년 전체를 통산하여 판단하는 구조다.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는 시행령 제15조 제13항이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 되, 계약기간 1년 미만(갱신으로 총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된다. 총급여액은 시행령 제14항이 정의한다.

소급적용의 문제

사후관리기간은 제도 도입 이후 10년 → 7년(2019.12.31. 개정) → 5년(2022.12.31. 개정)으로 단축되

어 왔다. 이 단축이 개정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794 판결은 이 쟁점에 대해 소급적용을 부정하였다. 사안은 2012년 9월에 상속이 개시되어 구법(10년 사후관리)이 적용되는 경우였는데, 상속인은 2020년 3월에 지분 30%를 전량 소각하여 사후관리 위반이 확인되었다. 상속인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법(5년)을 소급적용하면 사후관리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2019년·2022년 개정 부칙은 고용 유지 관련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후관리기간 자체의 단축을 기존 사안에 소급하는 것은 부칙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470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61075 판결)은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규정(2016.12.20. 신설)의 적용 기준 시점을 보여준다. 사안은 2013년 10월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상속인은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20년 1월에 주식의 양도(위반 행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였다. 과세관청이 신설된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추징하자,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2013년)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는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면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가 아니라 적법한 조세 처분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추징세액 외에 약 2억 1천만 원의 이자상당액과 이에 따른 가산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다.

이 두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유리한 개정)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부칙상 소급 규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의 가산(불리한 개정)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위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이다. 즉, 법의 적용 기준일이 개별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거에 상속을 받았더라도 사후관리 기간 중에 법이 개정되었다면 위

반 행위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개정 부칙 제7조는 예외적으로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상속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고용유지 관련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 요건에 한하여는 소급이 인정된다.

4 부 — 증여세 과세특례와의 선택

기업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두 번째 경로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주식을 증여하고, 조세특례제한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다. 상속 경로(법 제18조의2)와 증여 경로(조특 법 제30조의6)는 목적지가 같지만 세율 구조, 사후관리의 범위, 피상속인 사망 시 정산 방식이 다르다.

과세특례의 구조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하고,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과세특례의 효과는 주식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초과 20%로 적용하는 것이다. 2025년 12월 23일 조특법 개정(법률 제21223호, 2026.1.1. 시행)으로 종전의 60억 원 기준이 12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공제한도는 상속 경로와 동일하게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이다.

상속 경로와의 핵심적 차이 — 사후관리에서 묻지 않는 것

상속 경로의 사후관리는 네 가지 추정 사유(자산처분, 미종사, 지분감소, 고용유지)를 5년간 감시한다. 증여 경로의 사후관리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조특법 제30조의6 제3항 제1호)와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같은 항 제2호)를 감시한다. 제1호의 가업 미종사에는 대표이사 미재직, 주된 업종 변경, 1년 이상 휴업·폐업이 포함되므로, 가업종사 의무와 가업유지 의무가 결합된

구조다.

증여 경로가 상속 경로와 구별되는 핵심은 다음 두 가지를 독립된 추정 사유로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째, 가업용 자산의 처분이다. 상속 경로에서는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추정되지만, 증여 경로에서는 자산 처분 자체를 별도의 추정 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 처분의 결과 가업의 휴업·폐업 또는 주된 업종 변경 등 가업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하여 추정될 수 있다. 둘째, 고용유지다. 상속 경로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5년 전체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만으로 하락하면 추정되지만, 증여 경로에서는 고용유지를 추정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기업에게는 이 차이가 의미 있는 실익이 된다.

증여 경로의 추가적 고려 사항 – 사망 시 정산

증여 경로에는 상속 경로에 없는 절차가 하나 있다. 증여자(부모)가 사망하면,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기납부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된다(조특법 제30조의6 제6항이 위임하는 시행령에 따른 정산 구조).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증여세의 면제가 아니라 상속 시까지의 과세 이연에 가까운 구조임을 의미한다. 다만 증여 시점의 주식 평가액이 사망 시점의 평가액보다 낮다면, 낮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세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증여 시점의 낮은 세율(10%/20%)로 확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증가를 일부 상쇄한다.

경로 선택의 변수

상속 경로와 증여 경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음 네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이전 시점의 통제 가능성이다. 상속은 사망에 의해 개시되므로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증여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시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을 골라 이전할 수 있

다.

둘째, 사후관리의 부담이다. 사업 구조조정(자산 처분, 고용 조정)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증여 경로의 추정 사유가 두 가지로 제한된다는 점이 유리하다.

셋째, 세율 구조의 차이이다. 상속 경로는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내리는 방식이므로, 차감 후 남은 과세가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증여 경로는 10%/20%의 특례세율이 확정적으로 적용된다. 상속 재산 총액이 크고 가업상속 재산가액 외의 재산도 상당한 경우에는, 상속 경로로 과세가액을 줄이는 것이 전체 세 부담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다.

넷째, 사망 시 정산의 영향이다. 증여 경로는 부모 사망 시 가산·정산 절차가 발생하므로, 증여 후 사망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가치 변동이 최종 세 부담에 영향을 준다. 이 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비교 항목	상속 경로 (법 제18조의2)	증여 경로 (조특법 제30조의6)
이전 시점	사망 시 (선택 불가)	생전 (시점 선택 가능)
세율 효과	과세가액 차감 → 누진세율 구간 하락	10%/20% 특례세율 확정 적용
추정 사유	4가지 (자산처분·미종사·지분감소·고용유지)	가업종사·가업유지·지분유지 (자산처분·고용유지는 별도 추정 사유 아님)
자산 처분	40% 이상 처분 시 추정	추정 사유 아님
고용유지	90% 미만 시 추정	추정 사유 아님
사망 시 정산	없음	증여재산 상속세 가산, 기납부세액 공제
공제한도	300/400/600억 원	300/400/600억 원 (동일)
120억 원 초과분 세율	해당 없음 (과세가액 차감 방식)	20% (2026.1.1. 시행)

5 부 — 추정과 불복

사후관리 기간 중 추정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가 밝게 되는 절차는 조세불복의 순차 구조를 따른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추징 자체를 다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추징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정당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분쟁에서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의 시간적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절차의 순서

출발점은 자진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처분이다. 상속인이 스스로 사후관리 위반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한다(시행령 제15조 제23항).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추징 처분을 한다. 세무서장은 매년 사후관리 해당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24항).

이후의 불복 절차는 사안에 따라 두 트랙으로 분기된다. 과세관청의 추징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것도 가능하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반면, 자진신고 후 납부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거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 경정청구와 처분불복은 항상 순차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선택·분기되는 절차다.

심판례에서 나타나는 쟁점 구조 — 행정청의 논리와 납세자의 논리

본 해제에서 인용한 심판례들은 행정청(처분청)과 납세자(청구인)가 각각 다른 법리적 논거를 내세우는 구조를 보여준다. 그 대립의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적분할과 매출액 기준(조심2025중0140, 조심2025부1748). 처분청은 분할 전 법인이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요건을 10년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적분할을 이용한 편법 공

제를 방지하려는 과세 형평의 논리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문이 "직전 3개 사업연도"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개시 당시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고 주장하였고, 법문의 한계를 넘는 확장 해석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입장을 지지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문의 문언 해석이 과세 목적의 확장 해석에 우선한 사례다.

균등유상감자와 지분 감소(조심2023서0023). 청구인은 1인 주주로서 균등유상감자 후에도 지분율 100%가 유지되었으므로 지분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2017부5161 선결정례를 원용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균등무상감자만 정당사유에 추가되었으므로 미열거된 균등유상감자는 추정 대상이라고 반박하였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법문의 열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해석에 의한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번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된 사례다.

자녀 증여와 처분(조심2014서2390). 청구인은 상속인 내부의 지분 이동에 불과하므로 외부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처분 재산을 제외하더라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공제 금액은 변함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주식을 증여한 이상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처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공제 구조가 주식 수가 아닌 사업유관비율에 의해 산정되는 이상, 개별 주식을 공제 대상과 비대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매도가능증권과 사업무관자산(조심2025서2604). 청구인은 영업자금 확보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자금대기 상태에서 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약 2년간 실제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실적이 없고, 원금 회복 후 차익 실현 매도는 투자활동이라고 반박하였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취득 동기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적이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연부연납 — 추징과 별개의 납부 방식

상속세의 납부 방식으로 연부연납이 있다.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최대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가업상속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거치 5년 포함) 분할이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추징 여부와 무관한 납부 방식의 문제이므로, 추징이 발생하더라도 연부연납 중인 세액의 납부 계획과 별도로 추징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맺음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제도가 아니라 설계하는 제도다. 공제의 혜택은 상속이 개시되기 최소 10년 전부터 1세와 2세 양쪽에서 요건을 정비해 온 기업에만 돌아간다. 사전요건의 세 축(가업·피상속인·상속인)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공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제를 받은 뒤에도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에 네 가지 추징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상당액과 함께 환수된다.

둘째, 증여세 과세특례와의 선택은 사후관리의 부담을 포함하여 세율 구조, 정산 방식,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증여 경로가 자산 처분과 고용유지를 추징 사유로 두지 않는다는 점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든다.

셋째, 적용되는 법은 상속 개시 당시 시행되던 법이다. 이후의 개정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자동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7월 개편이 오든 오지 않든,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지금의 법이 적용된다.

나는 대구에서 법을 다룬다. 이 해제를 읽은 사장이, 세무사와의 다음 미팅에서 자기 회사의 사업무관자산 비율과 상속인의 종사 증빙을 점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글의 역할은 다한다.

발행 직전 속보 — 2026.7 세법개정안 전망: 이 해제의 유효기간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편법 활용 점검을 지시하였다. 국세청은 수도권 대

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중 11곳(44%)에서 남용 소지를 확인하였다.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네 가지를 골자로 제도 전면 재설계를 예고하였다. 대상 업종 축소(주차장업·비제조 베이커리 제외 방향), 경영기간 상향(현행 10년 → 15년 이상 검토), 사후관리 강화(현행 5년에서 상향 가능성 + 증빙서류·실태점검 강화), 토지 공제한도 설정(3.3㎡당 공제 한도 금액 신설). 구체적 조문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2026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2월 국회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공제 확대(5천만→5억) 등 핵심 부분이 부결된 전례가 있다. 시행은 빨라야 2027년 1월 1일이다. 본 해제의 서술은 현행법 기준이며, 개정안 확정 시 후속 호에서 신규 대조 해제를 게재한다.

직원이 자료를 들고 나갔을 때

— 영업비밀 침해의 세 관문과, 중소기업의 비밀관리 체계가 요구하는 것

0. 도입

대구·경북의 중소기업에서 이 장면은 반복된다. 핵심 직원이 퇴사한다. 한 달 뒤, 같은 업종의 경쟁업체가 생긴다. 기존 거래처에 전화가 간다. 사장은 분노하여 경찰서에 간다. "우리 서버에 있는 거래처 목록을 빼돌렸다. 고소하겠다." 수사관이 고소장을 받고 묻는다. "그 자료, 영업비밀로 관리하셨습니까?" 수개월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온다.

반대편의 장면도 있다. 퇴사자가 자기가 만든 영업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담아서 나왔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합니다."

이 두 장면의 공통 원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영업비밀의 의미가 사장과 직원 양쪽의 직관과 다르다는 데 있다. 이 조항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한다. 이 한 문장에 세 개의 관문이 들어 있다.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이다.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영업비밀이 되고,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법의 보호는 작동하지 않는다.

1부 — 제 1 관문: 비밀관리성

세 관문 중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이 비밀관리성이다. 이 요건의 법문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쳤

다. 2015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완화되었고, 2019년 다시 "비밀로 관리된"으로 정리되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은 이 개정 경과를 반영하여, 개정 전의 법리가 개정 후에도 기본적으로 타당하되 노력의 정도가 기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평가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다만 판례는 여전히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 — 표시·고지, 접근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 를 요구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은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들의 패턴은 일관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315 판결(대법원 확정)은 비밀관리성 판단의 교과서적 사례다. 피해회사는 보안등급을 1급·2급으로 나누어 문서를 관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전자파일이 별도의 암호나 방화벽 없이 열람 가능하였고, 출력에 제한이 없었으며, 대외비 표시가 없었고, 보안관리 담당 부서가 없었으며,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나 파일 회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 판결도 같은 패턴이다. 별도의 보안규정이나 보안유지자가 없었고, 비밀유지 서약이 없었으며, 파일이 별도의 관리대장이나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밀관리성을 부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419 판결은 직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에서 "비밀관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실시하여, 단순한 비밀번호 설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3260 판결은 보안준수서약을 작성하고 추상적인 보안교육을 받았으며

ID·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음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나 대외비 표시가 없었으며,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하였다.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특히 직원 5~1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이 판례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간극이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1차적 원인이다.

2 부 — 제 2 관문: 비공지성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은 비공지성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공지성 판단에서 핵심은 원시 정보와 가공 정보의 구분이다. 인터넷에 공개된 업체 목록(원시 정보)과 그 목록에서 실제 거래 가능성이 있는 업체만을 선별하여 담당자 성향·거래 이력·납품 단가·클레임 내역 등을 추가한 거래처 관리 파일(가공 정보)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이 질적 차이를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원시 정보에서 가공 정보로의 전환에 투입된 시간·비용·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4234 판결은 자동차 보험모집인이 고객정보를 가지고 퇴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직접 영업하여 수집한 고객 정보는 단순히 보험회사와의 정보 공유 등의 사정만을 들어 보험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직원이 자기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취득한 정보와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축적한 정보의 구분이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다.

3 부 — 제 3 관문: 경제적 유용성

대법원 2009다12528 판결은 경제적 유용성을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실무상 가장 유효한 논증 방식은 '절감된 시간과 비용'이다. "이 자료가 없었다면 경쟁사가 같은 수준의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걸렸겠는가"에 구체적인 숫자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 — 우회로: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의 반출과 업무상배임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이라는 우회로가 있다. 대법원 2009도3915 판결과 2010도3043 판결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는 비밀관리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턱이 낮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120 판결은 마케팅운영국 국장이 거래처 명단·매출 총액·판매단가 등 3,342개 파일을 반출한 사안에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서 업무상배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 판결은 반출된 파일이 피고인이 입사 전에 수집한 자료를 보충·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1795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회사가 퇴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부 — 사전 설계: 분쟁 이전에 결정되는 것

본 해제에서 인용한 판례들에서 비밀관리성이 부정된 사안들의 공통점을 역추론하면, 중소기업이 사전에 갖추어야 할 비밀관리 체계의 최소 요건이 도출된다. 이하의 다섯 가지는 대기업의 정보보안팀이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다. 직원 5~1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실행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비밀관리성 인정의 기초가 되고,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다룰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1. 접근권한의 차등 — 열람과 반출의 분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고단3315 판결에서 비밀관리성이 부정된 핵심 사유 중 하나는 "전자파일로 생성·보관되면서 별도의 암호나 방화벽 없이 열람할 수 있었고, 출력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도 두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2013고정3260 판결에서도 "모든 직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고, 개인 메일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회사 밖에 설치된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보안장치나 보안관리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뒤집으면 요구되는 것이 분명하다. 사내 서버(NAS, ERP 등)의 정보에 대하여 직급별 접근권한을 분리하되, 열람 권한과 복사·출력·외부전송 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경영진만 복사·출력이 가능하고, 실무자는 화면 열람만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DLP(Data Loss Prevention) 솔루션을 설치하여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의 연결 자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거나, 외부 메일 전송 시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같은 자료가 사내 공유 클라우드(드롭박스 등)에도 비밀번호 없이 올라가 있다면 서버의 접근권한 차등은 무의미해진다. 접근권한은 해당 자료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비밀 표시 — 객관적 인식 가능성의 확보

2015고단3315 판결은 "문서 출력본에 별도의 대외비라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2013고정3260

판결은 "보유 정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따로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구분 표시를 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각각 비밀관리성 부정의 근거로 들었다.

파일명이나 문서 상단에 [대외비], [기밀], [Confidential] 등의 명시적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표시는 직원이 해당 파일을 다룰 때 "이것은 회사의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표지다. 표시가 없으면 직원은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할 수 있고,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인다. 파일 단위뿐 아니라 서버 폴더 단위로도 '대외비 자료' 등의 명칭을 부여하여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비밀유지 서약 — 포괄적이 아닌 구체적인 의무 부과

2013고정3260 판결은 입사 시 보안준수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하였다. 2015고단3315 판결에서도 "직원들로부터 일관되게 서약서를 작성받아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퇴사를 하면서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어떠한 서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포괄적인 입사 계약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거래처 목록, 단가표, 설계도면, 고객 개인정보 등)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고, 그 정보의 반출·누설·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별도 서약서를 입사 시와 퇴사 시 각각 작성 받아야 한다. 특히 퇴사 시 서약서가 없는 경우, 퇴사자가 자유롭게 자료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반증이 된다.

4. 보안교육과 기록 — 진술이 아닌 문서의 확보

2015고단3315 판결에서 피해회사는 정기적으로 연 2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리자급 직원들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보안관리 책임자로 주장된 증인도 "

부서장들에게 교육을 지시만 하였을 뿐 본인이 직접 실시한 적은 없고, 부서장들이 실제로 이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연 1~2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참석자의 서명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관리자가 "교육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서면 기록이 유일한 증거다. 교육 내용도 "보안을 잘 지키자"는 추상적 당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반출 시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5. 퇴사 시 절차 — 증거 보전과 경로 차단

2015고단3315 판결에서 "피해회사는 이들로부터 파일을 회수하거나 업무용 노트북을 회수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밀관리성 부정의 근거가 되었다. 퇴사 직전에 대량의 파일을 USB로 복사하였다는 포렌식 증거가 있더라도, 회사가 퇴사 시 장비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업무 인계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행위"라는 항변이 가능해진다.

퇴사 시 실행하여야 할 절차는 업무용 PC·외장하드·USB 등 장비의 즉시 회수, 서버 및 시스템 계정의 즉시 차단, 퇴사 시 비밀유지 협약서 작성, 그리고 퇴사 직전 일정 기간의 서버 접속 로그 및 파일 복사 로그의 보존이다. 특히 로그 보존은 사후 분쟁에서 반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가 된다. 로그가 없으면 사실 포렌식으로 PC→USB 복사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서버에서 해당 파일을 추출한 경로를 입증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복사"라는 피의자의 항변을 받아들일 여지가 생긴다.

맺음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결과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된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밀관리 체계가 사전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한다. 퇴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만든 자료라고 생각하더라도, 대량의 파일을 퇴사 직전에 반출하거나 원본을 삭제하는 행위는 영업비

밀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리스크를 만든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묻는다.

이 달의 판례

— 주목할 판결 하나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 도 15967 판결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영업비밀의 중국 유출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위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1년 7월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에 입사하여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의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다. 초순수란 물속 이온·유기물·미생물·미립자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 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고순도의 물로, 반도체 공정에서 세정 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이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A는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의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이 확정되자, 퇴사 직전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최적 설계값 자동 계산 설계템플릿 파일, 제어 로직·설비 운전조건·인터락 정보가 담긴 파일, 설비시방서 출력물 29건, 설계도면 101장을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노트북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 A는 퇴사 시 "일체의 정보자산을 반납하였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2022년 4월까지 해당 자료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A는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경,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B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시스템 운전 매뉴얼과 시공 개선 자료 등 영업비밀을 넘긴 혐의도 받았다. B 역시 퇴사 후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에 입사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A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급심의 판단. 1심은 A에게 징역 3년, B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위

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회사가 초순수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였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고효율 RO시스템 최적설계기술'의 분류인 '담수'를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로 한정 해석하여, 공업용수를 정제하여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고시상 '담수'의 의미가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 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산업발전법과 구 산업기술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 '담수'와 '담수화'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에 따라 A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현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 18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상향한 바 있다.

실무 함의. 이 판결은 본지 섹션2에서 해부한 영업비밀 침해의 세 관문이 대기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매년 300억 원 이상의 R&D 투자로 기술의 경제적 유용성을 확보하였고, 설계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와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으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 때문에 1심부터 영업비밀 성립이 인정되었고, 대법원 단계에서는 영업비밀을 넘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확장되었다.

섹션2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사건들 — 보안서약서 없이, 대외비 표시 없이, 보안교육 기록 없이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여 반복적으로 좌절한 사건들 — 과 이 판결의 대비는 선명하다. 차이를 만든 것은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관리의 촘촘함이다.

부록 — 인용 판례 및 법령

인용 판례

섹션	판례	쟁점
01	서울행법 2024구합74427	상속인 직접 종사 입증 부족
01	수원지법 2024구합74794	사후관리기간 단축 소급적용 부정
01	서울행법 2022구합89470	사후관리 위반시 개정법 적용
01	조심 2026서0173	등록 전 영위기간 불산입
01	조심 2025중0140·2025부1748	인적분할 후 매출액 기준
01	조심 2025서2604	매도가능증권 사업무관자산
01	조심 2023서0023	균등유상감자 추정
01	조심 2014서2390	자녀 증여도 처분에 해당
02	대법원 2017도13791	비밀관리성 판단 기준
02	대법원 2009다12528	영업비밀 3요건 정의
02	대법원 2002다60610	비공지성 정의
02	대법원 2009도3915	영업상 주요 자산과 업무상배임
02	대법원 2010도3043	영업상 주요 자산의 기준
0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고단3315	비밀관리성 부정 (대법원 확정)
02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2	3요건 모두 부정
02	서울중앙지법 2021노3419	소규모 회사 비밀관리성
02	서울중앙지법 2013고정3260	포괄적 서약·교육만으로 부족
02	대구지법 2018노4234	보험모집인 고객정보 비공지성
02	수원지법 2020고단1120	영업상 주요 자산 배임 인정
02	대구지법 2023가단141795	개인정보보호법 원고적격 부정
03	대법원 2025도15967	초순수시스템 산업기술 해당 여부

인용 법령

법령	주요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공제 세부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제3호, 제39조, 제59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월간퀘도 · MONTHLY GWEDO

제2호 · 2026년 5월 발행

발행인 신한솔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402호

본지의 내용은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